

# [ 변경 대비 표 ]

## 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BNK BNK주주가치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변경서류	집합투자규약
변경사유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효력발생일	2026년 02월 24일

## 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1조(투자신탁분배금)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li> <li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li> <li>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(단서조항 신설)</li> </ol> <p>4. 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li> <li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li> <li>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(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)</li> </ol> <p>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</p> <p>② (기존과 동일)</p>
제32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문구 정정	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 분</p>

		배금을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으로 인도한다.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④ (생략)	배금을 <u>전자등록기관</u> 으로 인도한다. ③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<u>전자등록기관</u> 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④ (현행과 동일)
부칙	-	<신설>	< 부 칙 3 > <u>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6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</u>

<끝>.